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1년 4월 8일
- 나. 발 의 자: 이용주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축 사육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에서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규정한 상위법을 「축산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로 변경하였음. 이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가축분뇨법」으로 이에 따라 일치시킨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사육허가) 제2호의 상위법에 따른 용어에 맞춰 정비하였고,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2009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	-----

발의년월일: 2021년 4월 8일

발의자: 이용주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 사육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u>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3조(사육허가) <u>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u>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u> -----</p> <p>제3조(사육허가) -----</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각 호의 어느 하나-----</u></p>

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

하기 위하여 월2회이상 방역소

독을 실시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

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

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

산법」에 따른 부화장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

라 -----

----- 관리

하여 -----

-----.